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2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561,136,011	16,834,080
일반회계	548,976,011	16,469,280
일반회계	548,976,011	16,469,280
특별회계	12,160,000	364,8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	525,000	15,7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9,000	28,77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08,000	12,2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	5,270,000	158,10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4,000	1,020
주차장특별회계	4,964,000	148,9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474,334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4,620,270천원, 목적예비비 22,854,064천원)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